

## 1월5주차 전체위원회 심의의결서

연번	접수번호	대지위치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	주용도	층수	용도지역	심의일시	심의결과	의결내용
1	20196500000P000184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687	2,079	704.06	1,803.54	제2종근린생활시설	3/	계획관리지역	2019.1.31.	재심의	도로기준, 양각 45도를 확보하는 계획 바랍니다. 2층 이하 경사지붕(10m 이하)으로 계획 바랍니다. 건축물의 길이는 20m 이하로 계획 바랍니다.
2	20196500000P000310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748	1,253	241.5	318.54	제1종근린생활시설	2/0	계획관리지역	2019.1.31.	재심의	파라펫 높이 조정바랍니다.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경사지붕으로 계획 바랍니다.
3	20196500000P000183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67-2	5,465	548.46	898.73	제1종근린생활시설	1/1	보전녹지지역	2019.1.31.	부결	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